

하나 에듀카운전자보험(방카) 상품요약서

1.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가. 가입자격제한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가입연령
1년, 3년	전기납, 일시납	월납, 일시납	만19 ~ 만69세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나. 상품별 특이사항

1) 본 상품은 소멸성 순수보장성보험이므로 만기 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2.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가. 보장의 종류 및 보험금지급사유

구분	담보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기본 계약	교통상해사망· 후유장해 (3~100%)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3~100%의 장애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률						
선택 계약	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 장해(3~100%)	신주말(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 및 근로자의 날)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신주말(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 및 근로자의 날)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률						
	교통상해 입원일당 (1일이상180일임한도)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3만원						
	자동차사고 벌금(대인)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됨)	<table><tr><th>구분</th><th>보상한도</th></tr><tr><td>스쿨존 내사고</td><td>3천만원</td></tr><tr><td>상기 이외</td><td>2천만원</td></tr></table>	구분	보상한도	스쿨존 내사고	3천만원	상기 이외	2천만원
	구분	보상한도							
스쿨존 내사고	3천만원								
상기 이외	2천만원								
자동차사고 벌금(대물)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되어 벌금을 부담한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벌금액을 실손 비례보상	보험가입금액 한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	운전 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 혀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된 경우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제외)	보험가입금액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동승자포함)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부모, 배우자, 자 녀제외)을 사망하게 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 급한 금액(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자동차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 무면 허, 약물복용 제외)로 피해자(부모, 배우자, 자 녀제외)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보험가입금액 및 진단일수별 아래 금액을 한도로 지급 <table><tr><td rowspan="4">보험 가입 금액</td><td colspan="3">진단일수</td></tr><tr><td>42일 ~ 69일</td><td>70일 ~ 139일</td><td>140일 이상</td></tr><tr><td>3천만</td><td>1천만</td><td>2천만</td><td>3천만</td></tr><tr><td>5천만</td><td>1천만</td><td>3천만</td><td>5천만</td></tr><tr><td>7천만</td><td>1천만</td><td>4천만</td><td>7천만</td></tr></table>	보험 가입 금액	진단일수			42일 ~ 69일	70일 ~ 139일	140일 이상	3천만	1천만	2천만	3천만	5천만	1천만	3천만	5천만	7천만	1천만	4천만	7천만
	보험 가입 금액	진단일수																			
		42일 ~ 69일		70일 ~ 139일	140일 이상																
3천만		1천만		2천만	3천만																
5천만		1천만	3천만	5천만																	
7천만	1천만	4천만	7천만																		
자동차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 배우 자, 자녀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 되거 나 상해급수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자동차사고 성형치료비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약관 참조)로 인하여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애, 신체의 기 형이나 기능장애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골절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을 받은 경우(상해등급별 차등지급)	상해등급에 따라 최소 5만원 ~ 최대 5백만원까지 지급																			

※ 자동차사고별금(대인), 자동차사고별금(대물),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동일담보 다수가입
시 비례보상하여 드립니다.

※ 상기내용은 보통약관 및 각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만을 요약한 것입니다. 제사한 보장내용은 보험약관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나.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 1)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3~100%) : 교통상해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애지급률에 따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신주말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3~100%) : 금요일 오후(12시에 시작하여 24시까지), 토요일, 법정
공휴일(일요일 포함)또는 근로자의 날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 장애상
태가 되었을 경우 장애지급률에 따른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3)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180일한도) : 교통사고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에 대해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180일한도로 지급합니다.
- 4) 자동차사고별금(대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
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1사고당 보험
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 5) 자동차사고 벌금(대물)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액(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을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 6)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양식기소제외)가 되어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사고당 보험가입한도로 지급합니다.
- 7)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1사고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 8) 자동차사고 성형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에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 9)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골절 진단확정된 경우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 10)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에 따라 최소 5만원 ~ 최대 5백만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다.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 1)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2) 자동차사고벌금(대인), 자동차사고벌금(대물),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는 해당담보와 동일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그 **다른 보험계약과 함께 보험금을 비례보상 합니다.**
-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은 보통약관 및 각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보험료 산출기초 및 보험료예시

가.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나. 보험료 예시

자가용운전자(운전등급1급), 여자, 보험기간3년, 일시납

담 보 명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	50,000,000원	16,250
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	50,000,000원	7,750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 180일한도)	30,000원	18,825
자동차사고별금(대인)	30,000,000원	9,000
자동차사고별금(대물)	5,000,000원	849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5,000,000원	1,663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0,000,000원	15,118
자동차사고 성형치료비	1,000,000원	1,490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200,000원	20,907
자동차부상치료비	5,000,000원	29,753
보험료 합계		121,600

4.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가. 해지환급금 산출기초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이 보험의 미경과보험료를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나. 미경과보험료 산출기준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5. 문답항목(Q&A)

Q) 해지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A)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을 위한 제도로써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Q) 신주말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신주말'이라 함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및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반면 평일이라 함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신주말을 제외한 날을 말합니다.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이며, 구체적인 상품내용은 해당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